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2월 15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)

□ 제안이유

-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 및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관내의 보건소를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.(안 제8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본 조례안 제8조 제1항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도내 3개 시군밖에 없다고 하는데 타시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면 안되는 건지?</p>	<p>○ 현재 도내 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기회가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
<p>○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?</p>	<p>○ 부모와 2세 자녀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정하는 가족에 해당됩니다.</p>
<p>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감면 혜택 대상자중 연금수혜자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?</p>	<p>○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건의료혜택을 보고 있으며, 장기복무 세대군인을 넣은 것은 국가보훈처 요구가 있어서입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32호
의결 연월일	2004. 12. 23 (제116회)

제안년월일 : 2004년 12월 15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, 5.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만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
-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대상자로 보건소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를 받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므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.

2. 주요골자

-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에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외(안 제8조제1항제9호)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9호중 “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생활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”을 “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</p> <p>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자의 진료비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</p> <p>7.~8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9. (생략)</p>	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)</p> <p>①-----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-----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</p> <p>7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</p> <p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	<p>제8조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~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~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9.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</p> <p>10. (개정안과 같음)</p>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2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2. 8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이용시 진료비용 및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관내의 보건소를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(안 제8조제1항)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”을“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등)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“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”를 “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”로 하며, 동항제6호중 “진료비”를 “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”로 하고, 동조 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

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</p> <p>①보건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이상인 자의 <u>진료비</u>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 부담비용에 한한다.</p> <p>7.~8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9. (생략)</p>	<p>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)</p> <p>①----- -----<u>진료비 및 수수료</u>를 면제한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<u>건강진단 수수료 및 진료비</u>. ----- -----.</p> <p>7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</u>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</p> <p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.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.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건강진단수수료 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	<p>②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